

(앞 쪽)

수증자산명세서(금융기관외의 법인)								
과세연도 :								
1. 수증법인								
①법 인 명				②사업자등록번호				
③대 표 자 성 명				④업종(영위기간)				
⑤본점 소 재 지	(☎ :)							
2.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								
수 증 내 역				금 융 기 관 부 채 상 환 내 역				
⑥증여일	⑦주주등의 성 명	⑧법인과의 관 계	⑨금 액	⑩상환일	⑪금융기관명	⑫상환액		
3. 금전외의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								
수 증 내 역				양도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내역				
⑬수증일 (취득일)	⑭주주등 의성명	⑮법인과의 관계	<16> 시가	<17> 양도일	<18> 양도금액	<19> 상환일	<20>금융 기관명	<21> 상환액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의8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합니다.								
년 월 일 제출인 : 세 무 서 장 귀하 (서명 또는 인)								
※ 구비서류 1. 금융기관협의회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 1부 2. 증여계약서 사본 1부								

작 성 요 령

1. ④란의 업종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 중 중분류에 따라 기입하고, 당해업종의 영위기간을 괄호안에 기입합니다.
2. ⑦과⑭란의 주주등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서 증여자를 기입하며, ⑧과⑮란은 ⑦과⑭란의 주주등과 수증법인과의 관계를 기입합니다.
3. ⑬란의 괄호안에는 주주등이 증여할 자산을 취득한 날을 기입하고, <16>란의 시가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말하며,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기입합니다.
4. <17>란의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적용 하되,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(계약금은 첫회부불금에 포함)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보아 기입합니다.